

보도자료

2024.5.30.(목)

담당: 민주당 정책위원회

연락처: (02)6788-2606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

제22대 국회 민생·개혁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

-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5월 30일) ①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안 ②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안을 제22대 국회 민생·개혁 당론 법안 1호로 발의한다.
- □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가계소득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 황이다. 또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고 다중채무자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민생경제의 비 상사태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 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②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되,
 ⑤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에서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④ 민생회복 지원금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에 지급하도록 하며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 □ 동 특별조치법안은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하여 내수와 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로서 정부의 적 극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촉구한다.
- □ 다음으로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은 대민 지원 작전 수행 중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 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등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전국민적 의혹의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 □ 순직해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었으나 윤석열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고 여당의 반대로 최종 부결된바 있다. 윤석열대통령은 재의요구 사유로 여야합의없이 처리되었고 특검 후보자 추천권한을 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검임명권을 침해하여 삼권분립원칙에 어긋나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수사과정의 실시간 언론브리핑으로 인해 특검이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남용되고 수사대상자의 명예 훼손 우려가 있다는 점도이유로 들고 있다.
- □ 이번 순직해병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사유 중 민주당에게만 특검추천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일부 보완하여 민주당 외에 비교섭단체에게도 특검추 천권한을 부여하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수사외압 의혹 등의 주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에게 특검추천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드루킹 특검, 최순실 특검,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과 같이 교섭단체 일방이 의혹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특검추천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던 사례 역시 존재한다.
- □ 그밖에 여야 중 일방이 강행처리했던 특검법이 과거에 있었다는 점(대북송금 특검법 등), 수사과정의 실시간 언론브리핑을 규정한 특검법 역시 다수 있다는 점에서 재의요구 사유로 충분치 않으며, 오히려 수사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익충돌을 회피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 □ 순직해병 특검법은 순직해병의 사망 사건 및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사건 은 폐 및 조작 의혹사건, 수사 중 인지한 관련 사건 및 특검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섭단체 중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들이 1명의 특검 후보자를 각각 선정하여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그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정하고 있다. 특검의 규모는특검보 3명, 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 □ 또한 이번에 민주당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순직해병 특검법의 두드러진 특징은 수사 대상 사건이 재판 진행 중인 경우, 특별검사가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여부의 결정을 포함하여 공소유지 직무를 담당토록 하여 특별검사를 통해 순직해병과 관련된 사건들의 통일적 해결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 민주당이 개원에 발맞추어 추진하는 1호 당론법안은 정쟁이 아닌 무너진 민 생경제를 회복하고 정권에 가려진 실체적 진실을 찾고자 하는 국민적 염원 을 대변하는 것이다.

<첨부1>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첨부2>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안

2024. 05. 30.



정책위원회 의장 진성준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이재명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4. 5. 30.

발 의 자 : 이재명 의원 외 170인

제안이유

과일·채소 등 신선식품을 비롯하여 외식비, 공산품, 학원비까지 필수품목들의 가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유가 상승과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고물가로 인한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고금리로 대출이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고물가로 경기는 여전히 어려우니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다중채무자도 역대 최고 수준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가계의 지출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소득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임. 대한민국 민생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비상사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이에 가계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하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로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함.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전국민으로 하고, 지급액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지급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로 함(안 제4조).
- 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토록 함(안 제5조).

법률 제 호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국민에게 생계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와 실질 소득 정체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 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사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 다.
- 제4조(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 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지급액,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다.

- 1. 지급액: 지급대상의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 2. 지급시기 :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일자
- ③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기한) 제4조에 따라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급시기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4. 5. 30.

발 의 자 : 박찬대의원 외 170인

제안이유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하여,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 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불거짐.

대통령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여 수사와 관련한 기밀 사항을 보 고 받고,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 나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하였으며, 관 련 수사기록의 내용을 손상·은닉하고 효용을 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 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음.

또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및 신원불상의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출국금지된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 한국대사로 임명하였 으며, 도피성으로 대사에 지명하고 해외 출국을 추진한 것에 대해 국민적비난이 쏟아지던 중, 3월 10일 호주대사로 지명된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금지가 해제된 채 '몰래 출국'을 단행한 바, 이러한 출국과정에서 불법행위 등에 대한 의혹 또한 불거지고 있음.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법과 정의의 실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순직 사고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에 있어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국민은 군 검찰단이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음.

이에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의혹사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 위임(안 제2조).
-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

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안 제3조).

- 라. 특별검사는 수사 대상 사건이 재판진행 중인 경우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의 결정을 포함하여 공소유지 직무를 담당하며,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됨(안 제8조).
-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 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법률 제 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호의 사건에 한정한다.
 - 1.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 2. 제1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직권 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대상에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군인권보호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한다)
 - 3. 2호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 한 불법행위
 - 4.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 5. 제4호와 관련하여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 6.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 사에 대한 방해행위

-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 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중에서 교섭단체 1명, 비교섭단체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총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 ⑤ 대통령이 제4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 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자
 -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

- 다)로 등록한 사람
-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공소유지의 경우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
 - 2.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화·조사할 수 없다.
 -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

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 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 여야 한다.
-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 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제4항 및 제11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 져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 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특별검사등은 제11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 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 2.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 3.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4.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 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후단을,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7조제6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다.
- 제17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해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 ②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 제19조(이의신청) ① 제2조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 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 야 한다.
 -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

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1조(벌칙) ① 특별검사 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특별검사 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 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6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